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9호로 2018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미래비전추진단 및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급상당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제5조)

나.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미래비전추진단의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신설
- 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신설(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 복지국의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신설

다. 수요자 중심의 알기쉬운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1조)

-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라. ‘4차산업시대’ 대비를 위한 교육방향의 전환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자원봉사(복지국 → 행정국)
-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생활환경국 → 재정국)
-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생활환경국 → 도시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최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현황표 참조)을 살펴보면,

※ 주요내용 현황표

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비전추진단 ▶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p>(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p>
부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p>(안 제7조)</p>
부서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과 ⇨ 미래교육과 ▶ 안전건설국 ⇨ 안전교통국 	<p>(안 제5조) (안 제3, 11조)</p>

- 안 제3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에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재편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가정복지과와 다문화지원과를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복지과로 통합 및 재편하여 출산 및 보육, 청소년 아동, 외국인 다문화 정책추진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국간 업무 이관사항으로는,
- 안 제5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업무에 구정의 기획·조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정책 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행정국 소관업무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재정국 소관업무에 의회협력,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복지국 소관업무에 여성정책, 보육, 출산장려, 아동친화도시, 드림스타트, 고령화 대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생활환경국 소관업무 중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하천시설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일원화를 통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8국(소), 2담당관, 35과, 2전문위원, 18동, 219팀이,

2019년 1월부터, 8국(소),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18팀으로 조정되어 1개의 단이 신설되고 1개의 팀이 감소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변화가 매우 급격하고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조직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상시화된 노력이 요청되는 바임.

또한, 우리구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0호로 2018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경쟁력있는 도시 영등포’ 로 발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사업들을 총괄추진할 ‘미래비전추진단’ 설치에 따른 4급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12’을 ‘1,413’로 개정(증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85’을 ‘1,386’로 개정(증 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별표 3)

- 총계 ‘1,412’을 ‘1,413’으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총계 ‘1,407’을 ‘1,408’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24’를 ‘1,331’로 개정(증 7명)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13	1,41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8	1,408			
일	3급	1	1	-	-	-
	4급	9	7	1	1	-
반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31	1,331			
직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9급 3호봉 기준)

1)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109,146	109,146	-	-	

2) 세부내역

○ 채용인원:1명(4급 1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09,146	
기본급 (봉급)	87,373	연봉상한액 (성과급,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포함)

직급보조비	4,800	월 직급보조비(400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3,103	보수월액의 3.23% 부담
연금 부담금 등	9,958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3,912	- 가족수당 480천원 - 정액급식비 1,872천원 - 연가보상비 1,56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 및 전략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12명에서 1,41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44억원 내에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의 4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미래 영등포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창조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44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94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명의 인건비는 연간 1억 914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 참조)

붙임 1

2018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 124,399,020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19,423,135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19,423,135
101 인건비	94,626,774
101-01 보수	75,601,986
101-02 기타직보수	6,813,056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211,732
204 직무수행경비	2,686,615
204-02 직급보조비	2,686,615
303 포상금	4,181,393
303-02 성과상여금	4,181,393
304 연금부담금등	17,928,353
304-01 연금부담금	15,100,190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828,163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규정 (안 제3조)

다. 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8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제16조)

-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신분 규정

- 다.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발전과 통일정책을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관리·운용,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50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추세이며, 앞으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우리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과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 2조)

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1)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규정함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범위 규정(안 제5조)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마.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 7조)

1)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바. 협의회 구성 등(안 제8조)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3)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사.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 (안 제9조 부터 제13조)

아. 지원단체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14, 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시 관련 예산 편성
다. 입법예고 (2018. 10. 4 ~ 10.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과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비밀엄수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탈북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정한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지역사회, 영등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등포혁신교육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정의 신설 및 적용범위 구체화(안 제1조의2, 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인·단체로 구체화(안 제5조)

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마. 수당 지급대상에 분과협의회 위원 추가(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의2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를 공교육 혁신사업, 마을과 학교 협력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평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분과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5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과학육성협의회’와 ‘과학육성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과학교육 지원 사업 등 과학인재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다.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라.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과학육성협의회”와 “기금” 관련 기존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한 과학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과학육성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과학육성사업 추진 공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활한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서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